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8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 권향엽・박용갑・조인철

박민규 • 채현일 • 김문수

이해식 • 오세희 • 박지원

전진숙 · 문진석 · 임미애

정동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규정이 미비함. 또한 계엄 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이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재판권을 1개월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계엄 기간의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의 군사법원 재판 연기권을 삭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엄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에 대한 국회 동의) ①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대통령은 계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엄이 종료되기 7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수색·거주·이전"을 "수색"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생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u>①</u>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계엄 기간은 7일 이내로 한		
	<u>다.</u>		
<u><신 설></u>	제4조의2(계엄에 대한 국회 동의)		
	①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		
	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국회 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대통령은 계엄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때에는 계엄이 종료		
	되기 7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		
	고하여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u>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u>		
	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	①		
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			
포·구금(拘禁)·압수· <u>수색·</u>	<u>수색</u> -		
<u>거주·이전</u> ·언론·출판·집회			
•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			
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 회)① (생 략)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 역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 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연기할 수 있다.